

의안번호	제 749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

발의자	이숙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#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
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이숙애, 박형용, 이상욱  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  
연종석

## 1. 제안이유

- 경제적·정신적·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,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나.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다.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라.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58호
- 다. 협 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
- 라.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경제적·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가노인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재가노인지원서비스”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,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재가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재가노인이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목표 및 기본방향
2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5.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서비스 이용대상)**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.

1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) 160% 이하의 재가노인
2. 경도인지장애,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
3. 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재가노인
4.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(장기요양, 맞춤형돌봄,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함한다)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재가노인
5.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
6.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가노인

③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6조(서비스 내용)**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접서비스 :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, 주거환경개선지원, 여가활동지원, 사례관리, 상담지원, 가사간병지원, 지역사회자원개발, 치매예방프로그램지원, 조손가정지원 등
2. 간접서비스 : 연계지원, 교육지원, 이동지원,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, 노인인식개선사업
3. 긴급서비스 : 위기지원서비스, 응급호출서비스 등
4.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시설의 평가)** ① 도지사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·군,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노인복지법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재가노인복지시설)**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방문요양서비스 :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(이하 “재가노인”이라 한다)으로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

2. 주·야간보호서비스 :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

3. 단기보호서비스 :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

4. 방문 목욕서비스 :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

5. 그 밖의 서비스 :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

**제47조(비용의 보조)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## 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
## 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26조의2(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)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”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12.>

1. 재가노인지원서비스: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,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

제27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)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2. 24., 2016. 6. 30., 2019. 12. 12.>

1. 장기요양급여수급자
2.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(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)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방문요양서비스 :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

나. 주·야간보호서비스 :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

다. 단기보호서비스 :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

라. 방문 목욕서비스 :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

마. 재가노인지원서비스 :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·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

바. 방문간호서비스: 가정 등에서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

## 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보장급여“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, 현물,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제1호

### ○ 첨부제외 사유

-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에서 정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재가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(서비스 내용)에 따른 사업은 현재 도 내 19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- 또한 안 제6조제4호에 따른 “4.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”의 경우, 지원 규모·대상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